
공정거래 관리 정책

2024. 03



목 차

1. 제정 목적
2. 적용 범위
3. 기본 원칙
4. 공정한 거래 관행
5. 투명한 거래
6. 청렴한 직무수행

1. 제정 목적

HJ중공업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을 구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이 지속가능경영의 중요 요소라는 점을 인지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공정거래 관리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의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 범위

본 정책은 HJ중공업의 모든 임직원 및 HJ중공업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사 및 협력사의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3. 기본 원칙

- 가. 모든 거래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기여함을 인식한다.
- 나. 회사와 임직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래행위를 지양한다.
- 다.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자율경쟁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협력사를 선정한다.
- 라.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협력사와 그 임직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공정한 거래 관행

- 가. 계약 시 회사가 허용하는 수금 조건 및 대금 지급 기준을 위배한 계약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 나. 발주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의거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 다. 계약 범위의 변경, 공사 범위의 변경, 공기 조정 등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절차는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상의 절차와 달리 자의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 라. 모든 발주는 경쟁 입찰에 의한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필요 및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식은 택할 수 있다.
- 마. 발주서의 품질보다 고의로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받아 협력사가 부당 이득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 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로 하여금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암묵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사. 특정업체에 고의로 작업의 난이도가 특별히 낮거나 높은 작업을 할당하는 행위, 업체에게 인력이나 장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고의로 장비 지원을 지연 시키는 행위,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거 없이 협력사에게 추가 공수를 인정하는 행위 및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장비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아.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이해 상충 :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 지분을 소유한 경우 등)

5. 투명한 거래

- 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보장, 취업 알선, 거래 약정 등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제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 나. 임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협력사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등의 공동이익 추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협력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
- 다. 임직원은 부정비리 등의 행위로 해고, 사직 처리된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이 당사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포함)와 거래해서는 안 된다.
- 라. 임직원은 협력사로 하여금 회사의 공정거래 정책 및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6. 청렴한 직무수행

- 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을 요구, 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나. 임직원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물품, 회원권, 숙박권, 입장권 등의 선물을 수수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반송하거나 반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여야 한다.
- 다. 임직원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나 오락 등의 향응 및 접대를 제공받을 수 없으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 진행한다.
- 라. 임직원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교통수단 및 숙박 제공,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 마. 임직원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 또는 경조 물품을 수수할 수 없으며, 경조 사유에 따른 경조금 또는 경조 물품을 수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할 수 없다.